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파인밸류자산운용**

< 차 례 >

제 1 조	목적 -----	2
제 2 조	적용범위 -----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	2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3
제 5 조	수수료 체계 -----	3
제 6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	4
제 7 조	설명 의무 -----	4
제 8 조	공시 및 통보 -----	4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3. 3. 20.

개정 2015. 12. 17.

전부개정 2022. 10. 11.

**제 1 조 (목적)**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수수료 부과기준” 또는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58 조에 근거하여 파인밸류자산운용(이하 “회사”)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등(이하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계약자산, 투자일임계약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받는 보수
2.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자산, 투자자문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3. 집합투자업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신탁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7.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
8.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투자금을 환매할 경우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귀속
9.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제 9 호에 해당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제 10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인정 가능한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유사전략,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⑥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임 및 자문계약,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수수료 체계)** 투자자와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 지급 (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제 6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투자자와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이하 "선취")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해지되는 경우 제 1 호에 따른 선취금액 중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10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이 기준을 법 제 58 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2022.10.10>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에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계약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 년 10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